

조경수 가격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

66

현재 농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로 매우 심각한 시기에 농외소득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경수의 가격이 너무 저렴한 상태에 있음은 조경수 생산자의 개인 손실은 물론이고, 물가정책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조경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달청에서 이와같은 오늘의 현실을 충분히 통찰하셔서, 조경수 가격의 적정을 이루어 앞으로 수요가 일의 증대되어 조경수 생산이 촉진되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선처가 계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99

하 늘 높고 맑은 계절에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조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조경업계가 이 만큼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조경수 가격은 1977년 건설부 외 9개 기관의 조경소재 표준화 및 가격적정화 관계 기관 합동회의의 합의사항에 따라, 매년 조달청에서 10개 수요기관의 실무자들로 조사반을 구성, 전국 각 지역별로 조경수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조달청 발행 가격 정보지에 게재 활용하고 있사오나 실은, 그 가격의 적정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오늘의 국내물가 동향을 조감컨데, 모든 물가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정부통계에 의하면 도매물가는 10년 동안에 152%, 소매물가는 220% 상승되었으며, 정부 고시 노임은 650% 이상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 농촌을 불문하고 인부를 구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임을 누구나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정부노임단가를 보건데 보통인부 노임이 16,100원으로 계산되었으나 현실노임은 25,000원~30,000원으로서 정부노임 단가로서는, 실제로 인부사역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조경수 생산비의 60~65%를 노임이 차지하고 있음을(별첨표 참조) 감안할 때, 조경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나무이면서도, 산지용수목(조림 용 묘목)은 10년 동안에 760%나 인상되었으나 조경수만은 10여년 동안에 겨우 100% 인상되므로서, 생산가에도 못미쳐 생산자가 조경수 생산을 기피하고, 타직종으로 전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음은 남모르는 고충과 어려움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같은 토지 생산업이면서도 농산물은 단기

간(5~6개월) 내에 수익을 볼 수 있사오나, 나무는 장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10~15년 동안, 매년 제초, 단근, 해충방제, 시비, 이식, 전정작업 등 각종 사업과정을 통하여 조경수가 생산되므로 그간에 인건비, 재료비, 운반비, 상하차임 등 많은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여야 하는 여건과 애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수만명(그중 농민이 95% 이상)에 달하며 조경수 가격 인상은 이들의 농외소득과도 직결되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생활주변은 도시화, 산업화등으로 인하여 일의 증설되고 있는 주택지, 도로등으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도시 공간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녹화하여야 할 지대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조경수의 수요량도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조경수의 생산촉진은 국가정책상으로나, 국민경제 면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인습에 의하면 조경수(과거 관상수)는 일부 특수층의 전유물로 인정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국민의 생활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반 대중의 생필품으로서, 도시나 농촌의 각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아무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조경수 가격을 인상하면 결국 조경업체가 폭리를 보게 된다는 이론도 있사오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조경업체는 대부분 자기 토지에 한정된 수목만을 재배하고 있어서 조경공사시에는 지방 생산자로부터 다량의 조경수를 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경수 가격인상은 곧 일반 생산자에게 큰 혜택을 주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비추어볼 때, 조경수 가격은 50% 이상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30%선 인상이 꼭 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우루파이라운드 문제로 매우 심각한 시기에 농외소득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경수의 가격이 너무 저렴한 상태에 있음은 조경수 생산자의 개인 손실은 물론이요, 물가정책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조경업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달청에서 이와같은 오늘의 현실을 충분히 통찰 하셔서, 조경수 가격의 적정을 이루어 앞으로 수요가 일의 증대되어 조경수 생산이 촉진되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선처가 계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¹

1991. 9. 15

홍장로／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상근 부회장

표1. 교목 관목별 평균 생산 비목별 구성비

교 목	교 목	관 목	비 고
	구성비(%)	구성비(%)	
노 임	60	65	
종묘대	8	6	
제재료비	10	4	
차지료	5	8	
시업비계	83	83	
금리	4.6	4.6	시업비계 × 5.5%
농기구손료	1.2	1.3	노 임 × 2%
합계	88.9	88.9	
농가이윤	8.9	8.9	합계 × 10%
공과잡비	2.3	2.2	농가이윤 × 25%
총계	100	100	